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의안번호

333

2023. 11. 30.

복지환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: 2023. 11. 10. / 남양주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3. 11. 13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3. 11. 30.

2. 제안설명 요지

○ 제안이유

가. 현행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가 청년의 정의를 ‘19세 이상 34세 이하’로 규정하고 있으나, 동조 단서 규정에 ‘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는 그에 따를 수 있다’라고 정하고 있어 사업별 추진에 혼선 발생

나. 이에 청년 연령의 상한 기준을 39세로 상향하여 청년 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우리시 청년 정책의 통일적 운영을 도모하는 등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○ 주요내용

○ ‘청년’의 정의 규정 개정(안 제3조제1호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서용관)

- 본 안건은 청년 연령의 상한 기준을 39세로 상향하여 청년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우리시 청년정책의 통일적 운영을 도모하는 등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- 참고로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 제1호 규정에 따르면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하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고, 이미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상한 기준을 39세로 정의하고 있음.
- 검토 결과 청년의 정책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.

4. 질의·답변요지 :

-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『원안가결』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